



공정거래법 실질시례 해설 및 평석

본 협회 조사부

한국전력공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공정위 1998. 5. 9. 의결 제98-70호 / 사건번호 9803독관0329

I. 사실개요

피심인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법에 의거 설립된 정부투자 기관으로서 공정거래법 제2조제7호의 요건에 해당되어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고시된 1997년도 전기공급시장부문 시장지배적사업자이다.

종합유선방송의 전송망사업자(N/O)인 피심인은 자신의 10%출자회사인 한전정보네트웍(주)에 230억원을 출자한 후, 동출자회사로 하여금 연합통신으로부터 종합유선방송의 프로그램 공급업자(P/P)인 YTN의 주식 30%를 230억원에 인수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심인은 계열회사인 YTN의 광고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1996년도 자신과의 계약금액이 큰 67개 납품업체 등에 대해 업체별로 계약금액에 연동한 연간 YTN 광고목표액(약 160억원)을 책정한 후, 주관부서(거래처 관련사업단)를 업체별 담당자로 지정하여 동 납품업체 등에 대해 목표액에 상응한 액수의 YTN 광고제재를 적극 요청한 사실이 있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행위에 관한 내용은 이를 생략한다.

II. 심결 요지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의 위 행위가 구입강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1. 거래상 우월한 지위

① 피심인은 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 발전용 연료, 자재, 전기관련 건설공사, 기술용역 등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대규모 발주자의 지위에 있으며, 특히 전주, 전선, 발전용 기기 등 전력공급시설과 관련된 품목에 대하여는 수요독점적 지위에 있으며, ② 피심인의 ①과 같은 지위로 인해 납품업체로서는 피심인이 거래

를 중단할 경우 다른 거래선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은 납품업체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자라고 인정된다.

2. 구입강제행위

피심인이 납품업체 등에 대하여 거래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납품업체별로 목표액을 책정하고 관련부서를 통해 YTN에 대한 광고제재를 요청한 이 사건 행위를 광고제재 의사가 없는 납품업체 등으로 하여금 YTN에 광고를 게재하도록 사실상 강제한 행위에 해당된다.

III. 법령의 적용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의 위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관련 [별표]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가목에 해당한다고 보고, 동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사실에 대한 신문광고의 게재를 명하였다.

해설 및 평석

1. 우월적 지위의 정도와 강제성 여부의 관련

구입강제에 있어 구입의 강제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심인의 지위의 우월성의 정도와의 관계를 항상 고려하여야 한다. 본 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이 YTN 광고제재를 “적극 요청”하였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즉, 표면적인 강제수단은 나타나 있지 않으나, 피심인의 현저한 우월적 지위를 통해 납품업체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종합적으로 구입을 강제한 행위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이 적절함은 물론이다.

2. 피심인의 행위의 부당성 여부

대부분의 프로그램 공급업자가 적자에 시달리던 상황에서 피심인이 연합통신으로부터 YTN 주식을 양도받게 된 동기를 보면, 증자와 비용절감 및 수익증대 등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경우 케이블 TV 전송망사업자로서의 수익증대, 원격검침과 배전자동화 추진을 통한 전기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 전력사업에 대한 대국민홍보사업 기여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하여 피심인은 YTN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벌였던 것이나, 그 중 구입강제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문제가 된 것이다. 생각건대, 전송망사업자인 피심인이 자회사를 통해 프로그램 공급업자의 지분을 취득하여 직접 경영정상화에 힘쓴 동기는 심문 이해할 수 있으나, 피심인이 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서 거래상대방의 결정의 자유를 쉽사리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경쟁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이러한 지원방식에 제동을 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본 건과 같은 심결을 계기로 피심인과 같은 공공사업자가 공익적인 목적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의 테두리내에서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비록 공정거래법 제63조와 같은 강제규정은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사전문의 등의 절차를 뽑는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20개 할부금융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공정위 1998. 5. 28. 의결 제98-103호 / 사건번호 9804유거0440~0459

I. 사실 개요

피심인 한국할부금융(주)와 19개 업체들은 물건매매와 관련하여 매도인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수인에게 융자를 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금융 방식인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피심인들은 1996. 1.부터 할부금융 영업을 하던 중 1997. 11. IMF의 긴급금융지원상황 이후 시중 실세금리의 폭등으로 조달금리가 대폭 상승하자 자기의 거래고객들에 대하여 당초 주택할부금융약정서에 일정기간 동안 대출 이자율을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이자율을 인상한 사실이 있다.

II. 심결 요지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들의 위 행위가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1. 피심인의 거래상의 지위

① 대출당시에는 할부금융사가 시중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보다 높은 금리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당초 가입자들이 담보력 부족 등의 이유로 할부금융사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점, ② 이 사건과 같이 고객이 이미 돈을 구매대금으로 사용한 다음에는 할부금융사의 요구를 따를 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들의 할부금융고객들에 대한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가 인정된다.

2. 피심인의 행위의 부당성

(1) 피심인은 자금조달 수단인 할부채권 만기에 맞추어 약정금리적용기간을 설정하고 동 기간동안 조달금리를 반영함으로써 주택할부금융약정서에 “고정금리방식 : 할부금융 이용종료시까지 불변” 등 일정기간 약정금리를 적용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이와 배치되어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해



석되는 “금융사정의 변화 등의 경우에 할부금융사가 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여신거래기본약관중 제3조(이자율 등의 변경과 지연배상금)를 원용하여 자기의 늘어난 조달금리비용증 상당부분을 이자율 인상을 통해 고객들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는 사업자인 피심인들이 스스로 부담해야 할 성격의 손해를 부당하게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심인들을 특정금리를 약정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상호보완적으로 양립한다고 주장하나, 주택할부금융약정서의 실제문구는 그러한 취지로 해석되기 어려우며, 설사 위 여신거래기본약관조항이 적용배제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다고 보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의 적용되어 거래고객에게 불리한 금리변경은 허용되지 않아 위 주장은 이유없다.

- (2) 피심인들은 이자율 인상을 수용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자유로이 할부금융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므로 거래상의 지위의 남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Ⅱ. 1.에서 본 바와 같이 고객들은 사업장의 일방적인 이율 인상으로 인한 추가금리 부담을 감수할 수 밖에 없어 이 주장도 이유 없다.
- (3) 피심인들은 또 경제사정이 대출당시와 다르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금리를 인상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법적 안정성의 견지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판례(1955. 4. 14. 4286민상231 등)인 점, ② 환율 및 금리변동 등 금융산업 여건변화에 대비한 금융자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의 전문적 영역이고 그 책임이라는 점, ③ 성원할부주택금융(주), 대한주택할부금융(주)를 제외한 나머지 피심인들의 경우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기한이 최장 2년 6개월 최하 10개월이 지나면 바로 도래하여 정당하게 이율을 인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종합할 때 이 주장도 이유없다.

III. 법령의 적용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의 위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별표]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라목에 위반된다고 보고 동법 제24조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사실에 대한 신문광고의 게재를 명하였다.

해설 및 평석

1. 금융업과 공정거래법

금융·보험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는 나날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외에는 금융·보험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왔던 동법 제61조가 입법적인 과오라는 지적과 그 전면 재검토에 대한 요구에 따라 삭제되고 예외인정이 계속되는 사항은 관련조항에서

개별적으로 예외를 인정하게 된 이래(1996. 12. 30. 법률 제5235호), 금융·보험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는 차례로 줄어들어 현재는 ①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에서 제외하는 것(동법 제2조제7호 단서)과 ②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계열회사 상호채무보증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동법 제10조의2제1항 단서) 두가지만이 남아 있다.

금융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진입과 요금이나 거래조건 등의 결정이 법률로서 제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은 그 독자적인 관점에서 이들에 대한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 남아 있는 두가지 예외마저 삭제하여 전면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본 사건은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가 전혀 문제된 일이 없는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것이다. 금융산업의 규제에 공정거래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 적례라고 할 것이다.

2. 거래조건의 설정과 변경

본 사건에서 피심인이 제기하고 있는 항변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피심인은 거래조건을 변경한 것이 아니고 본래의 주택할부금융약정서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문언상 본 사건에서와 같은 금리의 인상이 허용되고 있다는 주장이며, 둘째는 설사 이러한 인상이 본래의 약정서나 약관의 문언상 허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위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하여 허용되는 정당한 인상이라는 주장이다.

먼저 첫번째 주장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고정금리를 규정한 주택할부금융약정서의 조항과 금리변경 가능성을 인정한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조항은 상호모순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할부금융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되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약관규제법상 작성자불리의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금리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고객이나 할부금융사 할 것 없이 전국민에게 크나큰 타격을 입힌 외환위기의 피해를 부담할 원칙적인 책임은 전문금융기관인 할부금융사측에 있는 것이다. 즉, 형식·실질 어느 쪽의 논리로 보나 조달금리 폭등으로 인한 피해는 본 건과 같은 상황에서 할부금융사측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설사 다수학설이 인정하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금리폭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할 원천적인 책임이 금융사측에 인정되는 한 고객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피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는 것이며, 본 심결은 할부금융사의 이와 같은 영업형태에 대한 규제수단으로서의 공정거래법의 적절성을 매우 뚜렷하게 부각시켜 주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공정**